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802호 2022. 3. 10.(목) 수시분

【조 례】

제1519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1520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1521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11
제1522호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제1523호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5
제1524호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28
제1525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제152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8323)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19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촉위원”을 “위원장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한 차례 재위탁”을 “재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작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문화예술촌에 입주한 작가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20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공연장, 전시실”을 “소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촬영, 전시”를 “촬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연·연습·전시·행사·녹화”를 “공연·연습·행사·녹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상영, 미술작품 전시”를 “상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범위)”를 “(대관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공연장, 전시실”을 “소공연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4조제1항 후단 중 “변경 할”을 “변경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공연, 전시프로그램”을 “공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허”를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신청 할”을 “신청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연정국악원”을 “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후원하는”을 “주최 및 후원하는”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 할”을 “반환할”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이”를 “담당자가”로, “소각한다”를 “파쇄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8.「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9. 20인 이상 단체

제20조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회관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25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현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주문예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평 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09:00~12:00)	80,000	10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후(13:00~17:00)	100,000	120,000	
		야간(18:00~22:00)	120,000	140,000	
	소공연장	오전(09:00~12:00)	40,000	50,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60,000	7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대형	1회	60,000	1.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한다 2. 그랜드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비용 부담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조율사 중에서 선정 실시한다. 단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2급 조율사 자격을 가진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본시설 사용시에 한한다. 4. 음향반사판 사용 시 무대기계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중형	1회	40,000	
	업라이트	1회	20,000	
무대조명		1회	40,000	
무대기계		1회	40,000	
오케스트라핏트		1회	20,000	
합창단		1회	10,000	
음향	음향반사판	1회	60,000	
	유선마이크 (기본3개)	1회	5,000	
		추가1개당	3,000	
	무선마이크	개당/1회	5,000	
빔 프로젝트		대공연장/1회	20,000	
		소공연장/1회	10,000	
분장실		실당/1회	2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대공연장	1회	100,000	오전,오후,야간 각 1회로 본다
소공연장	1회	30,000	〃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21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아트센터고마(이하 “고마”라 한다.)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9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마”란 전시컨벤션홀 및 세미나실, 전시실,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2. “고마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행사・촬영 등을 위하여 고마의 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예술작품 전시 등을 의미 한다.

제4조(운영) 고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문화예술 행사, 연회 등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① 시설의 1회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동일인의 주관행사 또는 동일목적의 행사로 최대 30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기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공주시 또는 공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100분의 30 감액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다. 20명 이상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제시하는 경우

라. 50명 이상 공주시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대관 행사

2. 전시물품 이외의 물품을 거래하는 상행위를 함께하는 대관 행사

3. 고마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고마의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고마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고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고마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

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고마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마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아트센터고마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회의실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면적(㎡)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1일 (09:00~21:00)	비고
컨벤션홀 (평일)	1	181	140	160	140	440	
	2	182	140	160	140	440	
	3	187	140	160	140	440	
	전체	550	420	480	420	1,320	
컨벤션홀 (토, 일 공휴일)	1	181	160	180	160	500	
	2	182	160	180	160	500	
	3	187	160	180	160	500	
	전체	550	480	540	480	1,500	
컨벤션홀 냉난방비			하계(6월~8월) / 동계(12월~2월) 중 100,000원/회				
세미나실	1	90	90	100	90	280	
	2	92	90	100	90	280	
	3	99	95	105	95	295	
	4	92	90	100	90	280	
	5	63	80	90	80	250	
	6	87	90	100	90	280	
	7	109	100	110	100	310	

(비고) 1. 컨벤션홀, 세미나실 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일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3. 컨벤션홀의 경우 하계 및 동계기간 중 냉난방비를 회차별로 추가 산정한다.

2. 전시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면 적	1일 사용료	할인율		비고
			1·2·12월	7·8월	
전시실 1	140㎡	168,000	30% 할인	40% 할인	1,200원/㎡
전시실 2	248㎡	297,000			
전시실 3	117㎡	140,000			

[별표 2]

사용료 환급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행사명	국 문				
	영 문				
주최자	성 명(국 문)				
	성 명(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기 간	임대기간		20 . . .( ) ~ 20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20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20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20 . . .( ) (일간)		
장소/규모	□ 제1컨벤션홀 (㎡) □ 제2컨벤션홀 (㎡) □ 제3컨벤션홀 (㎡)		□ 세미나실 (1 ~ 7) (㎡) □ 전시실 1 (㎡) □ 전시실 2 (㎡)		
	부 스 수 : 부스 참가국가 수 : 개국 참가업체 수 : 국내(개 업체) 국외(개 업체)				
목 적	국 문				
	영 문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국 문				
	영 문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제5조 관련)

<table>
<tr><td colspan="3">구 분</td><td colspan="5">내 용</td></tr>
<tr><td rowspan="2">전시회/
행사명</td><td colspan="2">국 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영 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8">주최자</td><td colspan="2">성 명(국 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성 명(영 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주 소</td><td>국 문</td><td colspan="5"></td></tr>
<tr><td>영 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TEL</td><td colspan="2"></td><td>홈페이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FAX</td><td colspan="2"></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담당자</td><td>국 문</td><td colspan="2"></td><td>직 위</td><td colspan="2"></td></tr>
<tr><td>영 문</td><td colspan="2"></td><td>핸드폰</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기 간</td><td colspan="2">임대기간</td><td colspan="5">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colspan="2">행사기간</td><td colspan="5">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colspan="2">준비기간</td><td colspan="5">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colspan="2">철거기간</td><td colspan="5">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rowspan="5">장소
/규모</td><td>구 분</td><td>변 경 전</td><td>변 경 후</td><td>구 분</td><td>변 경 전</td><td>변 경 후</td></tr>
<tr><td>제1컨벤션홀</td><td>㎡</td><td>㎡</td><td>세미나실</td><td>㎡</td><td>㎡</td></tr>
<tr><td>제2컨벤션홀</td><td>㎡</td><td>㎡</td><td>전시실 1</td><td>㎡</td><td>㎡</td></tr>
<tr><td>제3컨벤션홀</td><td>㎡</td><td>㎡</td><td>전시실 2</td><td>㎡</td><td>㎡</td></tr>
<tr><td colspan="6">부 스 수 : 부스 참가국가 수 : 개국
참가업체 수 : 국내(개 업체) 국외(개 업체)</td></tr>
<tr><td rowspan="2">목 적</td><td>국 문</td><td colspan="5"></td></tr>
<tr><td>영 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전시품목
(구체적으로)</td><td>국 문</td><td colspan="5"></td></tr>
<tr><td>영 문</td><td colspan="5"></td></tr>
</table>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8조 관련)

<table>
<tr><td colspan="3">구 분</td><td colspan="3">내 용</td></tr>
<tr><td rowspan="2">전시회/
행사명</td><td colspan="2">국 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영 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주최자</td><td colspan="2">성 명(국 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성 명(영 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주 소</td><td>국 문</td><td colspan="3"></td></tr>
<tr><td>영 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EL</td><td></td><td>홈페이지</td><td></td></tr>
<tr><td colspan="2">FAX</td><td></td><td>e-mail</td><td></td></tr>
<tr><td rowspan="2">담당자</td><td>국 문</td><td></td><td>직 위</td><td></td></tr>
<tr><td>영 문</td><td></td><td>핸드폰</td><td></td></tr>
<tr><td rowspan="4">기 간</td><td colspan="2">임대기간</td><td colspan="3">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colspan="2">행사기간</td><td colspan="3">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colspan="2">준비기간</td><td colspan="3">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colspan="2">철거기간</td><td colspan="3">20 . . .( ) ~ 20 . . .( ) (일간)</td></tr>
<tr><td rowspan="2">장소
/규모</td><td colspan="2">□ 제1컨벤션홀 (㎡)
□ 제2컨벤션홀 (㎡)
□ 제3컨벤션홀 (㎡)</td><td colspan="3">□ 세미나실 (1 ~ 7) (㎡)
□ 전시실 1 (㎡)
□ 전시실 2 (㎡)</td></tr>
<tr><td colspan="5">부 스 수 : 부스
참가업체 수 : 국내(개 업체) 국외(개 업체)</td></tr>
<tr><td rowspan="2">목 적</td><td colspan="2">국 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영 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전시품목
(구체적으로)</td><td colspan="2">국 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영 문</td><td colspan="3"></td></tr>
</table>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22호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주시 축제명란에 “14. 옥룡동 효 문화축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축 제 명	개최장소	비고
14	옥룡동 효 문화축제	옥룡동 은개골 역사공원 및 효자 향덕·이복비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23호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

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24호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

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①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1. 일반주거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될 수 있다.
4.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5.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25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2022. 2. 22.)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3월　10일

공주시 조례　제152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영 제47조제4항”을 “영 제46조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